

제 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 회기결정의 건



창 원 시 의 회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 회기결정의 건

의안 번호	68
----------	----

제의연월일 : 2026. 9. 1.
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 이유
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,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,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,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,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 회기를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31일간으로 함.

3. 참고 자료

- 관계 법령
 - －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6조
 - － 「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- －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2조
- 의사일정(안) : 회의서류 참조

제155회 창원시의의회(제1차 정례회) 회기 결정(안)

「창원시의의회 회의 규칙」 제12조에 따라 제155회 창원시의의회(제1차 정례회) 회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○ 회 기 : 2026년 9월 1일 ~ 10월 1일 (31일간)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집회)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.

②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.

□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

제12조(회기)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,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.

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.

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